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0일, 임호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어기구의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보존 선박 등(이하 “장기계류선박”이라 함)은 그 관리주체가 지방해양수산청 및 법원 등으로 상이하여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선박의 침수·침몰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선박에 남아 있는 폐유의 유출 가능성이 커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선영)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기계류선박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에 해양경찰청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으로 규정된 경우는 이미 오염·사고 상황이 발생한 이후인 것과 다르게 개정안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선박을 현장조사한다는 점에서 침익적인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근거를 법상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음